

3년 후 '보신탕집' 역사 속으로...보상은?

육견협회 "한 마리당 200만원 보상...정부가 개 매입" 정부 "합리적 범위 내 최대 지원"...내부적으로 반대 8월 업계 보상안 담긴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발표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수십 년간 논란거리로 남았던 '개고기 식용' 문제가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전국에 남아있는 식용견 처리 문제와 농장주 및 식당 주인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두고 업계와 정부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어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게 핵심이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다음 해당 법

안이 시행되고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둔 만큼 2027년 여름 복날부터는 '보신탕집'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묵었던 '개고기 식용'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 업계와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특히 식용견 업계의 전업·폐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이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개 사육 농장, 개 도살·유통 시설, 개고기 식당 등은 폐업 및 전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3개월 이내에 시설의 명칭, 주소, 규모, 영업시설 등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폐업이나 전업을 지원하는 구조다. 애초 특별법에는

'정당한 보상'이라는 문구가 삽입돼 있었지만, 법 심사 과정에서 이 문구를 삭제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폐업과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적었다.

정부는 '정당한 보상'을 규정할 경우 불법의 소지가 큰 곳까지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없애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정부의 보상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보상 범위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식용견 사육 농장주 모임인 대한육견협회는 '정당한 보상'으로 개 한 마리당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 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추정해 5년간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달라는 것이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식용 개 사육 농장은 현재 1100여개, 식당은 1600여개로 추산된다. 또 현재 식용견은 약 52만 마리가 남아있다. 협회 요구대로라면 1조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폐업과 전업을 지원한다고 법에 적혀 있다"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안을 관계 부처와 육견 단체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한 마리당 200만원이라는 보상 비용이 지나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겨지는 식용 개 52만 마리 처리도 문제로 꼽힌다. 식용견 사육 농장 주는 유예기간 3년 이내 남아 있는 식용견을 모두 출하하거나 판매·입양해야 한다. 만약 농장주가 개를 버려둔 채로 폐업하거나 강제 살처분하면 동물보호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업계는 3년 안에 모든 식용 개를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갑자기 3년 안에 모든 개를 처리하기 위해 한꺼번에 출하시키면 가격 폭락 우려가 있다"며 "만약 정부 보상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개를 정부가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개 사육 업계가 제출할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에 식용 개 사육 마릿수를 줄일 방안을 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개 식용 관련 업계 등은 3년 유예 기간 동안 식용견 마릿수를 최대한 줄일 방안을 이행계획서에 적시해야 한다"며 "점차 마릿수를 줄여서 어떤 시점에 식용견을 없애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 식용 관련 업계 등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개 특별법이 공포되면 6개월 뒤인 7월 말~8월 초 '개 식용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관련 업계 보상안 등이 담긴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늦어도 8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 동부소방, 1월 중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광주 동부 소방서(서장 송민영)는 지난 12일 오후 2시에 전통신장 소방안전대책 추진과 연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여수경찰,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실시

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는 지난 10일 미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 100여명 참여한 가운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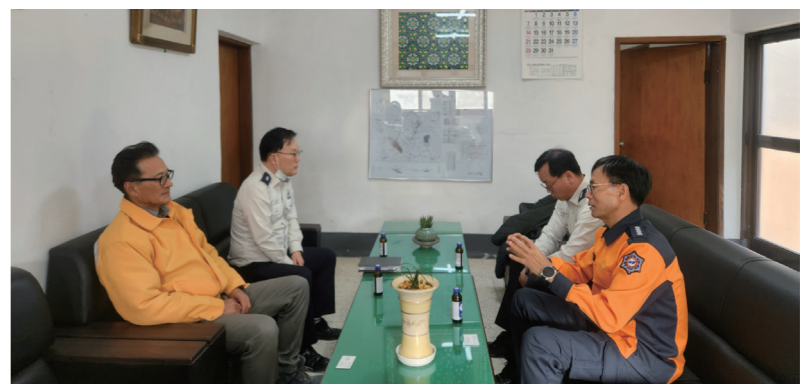
여수=기동취재본부



무안경찰, 경찰협력단체 연합간담회 개최

무안경찰서(서장 김정원)는 지난 12일 무안경찰서와 경찰협력단체 상호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치안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경찰협력단체 연합간담회('소통이음')를 개최했다.

무안=기동취재본부



완도소방, 현장부서 방문 및 안전컨설팅 실시

완도소방서(서장 박춘천)는 11일 취임 후 첫 업무로 도서지역 현장부서 방문 및 민경산업(주) 노화도광업소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담양소방,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담양소방서(서장 윤예심)는 최근 창평면사무소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신안소방, 겨울철 재난대비 위기대응 훈련 참가

신안소방서(서장 류도형)는 지난 11일 오후 천사대학교에서 겨울철 재난대비 위기대응 훈련에 참가하였다고 밝혔다.

신안=이덕주기자

못먹게 된 김치...음식물 쓰레기일까? 일반 쓰레기일까?

김치 소금기 물로 씻어내면 음식물 쓰레기 포화지방산 많은 생선 내장은 일반 쓰레기 파인애플 등 딱딱한 껍질도 일반 쓰레기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 기준 1만 4000여톤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 쓰레기로 배출돼야 하는 일부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흔하다.

음식물 쓰레기는 가족 사료를 비롯해 바이오 연료, 퇴비 등으로 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족의 사료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흔히 음식물 쓰레기로 알고 버려지는 것 중에는 일반 쓰레기가 상당수 있다. 우선 채소의 마른 껍질과 뿌리는 일반 쓰레기다. 대표적으로 양파, 파, 마늘 등 채소의 마른 껍질과 뿌리에는 가족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 일반 쓰레

기로 배출한다.

과일류 가운데 복숭아, 살구, 감, 체리, 망고 등 크고 딱딱한 씨앗과 파인애플, 코코넛 등의 딱딱한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한다. 또 호두, 밤, 땅콩 등 견과류의 껍질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한다.

다음으로 육류나 알 껍질도 일반 쓰레기다. 소 또는 돼지, 닭 등의 털과 뼈대, 비계, 내장 역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며, 달걀, 오리알, 메주리알 등의 껍데기도 일반 쓰레기다.

여기에 홍합,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의 껍데기와 생선의 내장도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생선의 내장은 포화지방산이 많아 사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각종 일회용 티백, 고추장과 같은 장

류 등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일회용 티백, 한약재, 커피 등의 찌꺼기는 일반 쓰레기다. 일상에서 활용도가 높은 고추장, 된장 등의 장류는 염분이 많아 가족의 사료로 사용할 수 없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한다.

또 굴, 바나나, 사과 등의 껍질과 딸기, 토마토 등의 꼭지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워 가족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한다.

김치는 처리 방식에 따라 분류가 배출 방식이 달라진다.

김치와 같이 소금기가 많은 음식은 물에 행귀 소금기를 털어내면 음식물 쓰레기, 그렇지 않다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한다. 이처럼 음식물 쓰레기는 가족 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와 분리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음식물 쓰레기 냄새로 골치라면 베이킹 소다를 활용하면 좋다. 베이킹 소다를 음식물 쓰레기 위에 뿌려주면 약 2시간 뒤 냄새가 거의 사라진다. 산성인 약취를 알카리성인 베이킹 소다가 중화하는 원리를 활용한 것이다.

오유나기자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걸렸는데...1심 '무죄' 이유는?

약 4.7km 음주 상태로 운전...75분 뒤 단속에 적발돼

술을 마시고 약 1시간 만에 음주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피고인이 운전대를 잡은 시점에는 단속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28일 밤 정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도로에서 정원구 사천동까지 약 4.7km를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오후 10시50분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75분 뒤 단속에 걸렸다. 29일 0시5분께 경찰이 음주 측정된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준인 0.03%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 최고치에 도달했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시점이 체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간대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이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얼얼빛이 붉은 것 빼고는 차분했고 진술한 점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처벌 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선욱기자